

의안번호	2210109
의 퇴 인	이병진 의원
회 답 일	2025.07.21.
추계번호	25C2580

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 (특례자 선정 등)	(제5항) 교육감은 특례자 발굴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례자 선정 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		(제6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례자가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7항)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자에 관한 판별·심사의 기준 및 절차와 통보, 조기입학 <u>자격, 홍보 내용 및 방식, 지원 기준 및 방법</u>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 (특례자 선정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①교육감이 매년 1회 이상 영재교육 특례자 제도를 홍보하도록 하고,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재교육 특례자를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함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영재교육 특례자 제도 홍보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예산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현행 「영재교육 진흥법」에 근거하여 영재교육 특례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, 현재까지 선정 사례는 1건에 불과함
 - 영재교육 특례자란 영재교육 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함¹⁾
 - '16년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영재교육 특례자 선정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 학생을 서울과학고등학교로 배치한 사례가 유일함
 - 개정안에 따라 영재교육 특례자 제도를 홍보하고, 선정된 영재교육 특례자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러나 현시점에서 홍보·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확실하고, 선정될 영재교육 특례자의 수, 지원 예산 규모 등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어려움
 - 참고로, 교육부는 「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」에 따라 영재교육 특례자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²⁾, '25년 기준 서울특별시, 경기도 2개 교육청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함
-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1) 「영재교육 진흥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8. “영재교육특례자”(이하 “특례자”라 한다)란 이 법에서 정한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.

「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」

제37조의5(특례자 선정기준 등) ①특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표준화된 지능검사, 사고력검사,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·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2.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·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·신체적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2) 교육부,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(2023.3), 15p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